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6.7.1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6호, 2016.7.18,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7.18.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조 중 “소방시설”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따른다.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8.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생략) 1. (생략)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016.7.18. 개정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생략) 1. (생략)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2)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8. 개정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생략) 1. (생략) 2.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생략)	
2016.7.18. 개정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생략) 1. (생략) 2. 영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생략)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5조제2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8.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생략)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	

	여야 한다. 2. (생략)	
2016.7.18. 개정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생략)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4제1항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생략)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6조제1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4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8.>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8.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3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2016.7.18. 개정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4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제8조 중 “영 제15조의3제3항”을 “영 제15조의4제3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8.>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8.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2016.7.18. 개정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부칙 <제2016-116호, 2016.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